

	국내학생현장연수 운영규정	표준번호	교무행정 6-20-1
		제정일자	2016. 2.29
		개정일자	2017. 2.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35조제3항에 의거 학생의 국내 현장연수(Internship: 인턴십)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연수(Internship)”라 함은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 기관 또는 산업체와 소정의 협약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 교육 및 실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현장연수 실시기관) 현장연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2.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3. 기타 총장이 현장연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국내 업체 또는 기관

제4조(학점 및 성적평가) ①학점 인정(또는 취득)은 졸업학기 해당학과에서 개설된 학점 범위 내에서 학칙 제35조제3항에 의거 인정(또는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인정(또는 취득)되는 학점은 학칙 제38조제4항에 의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범위 안에서 인정하며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단 교직과목과 국가고시 응시관련 의무 이수과목 학점은 제외한다.)

②해당학과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개별과목 별로 성적을 부여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하고, 교학지원처는 이를 근거로 해당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다.

③성적평가는 중간평가, 연수기관평가, 순회지도평가, 연수일지 평가 등을 적용하여 성적을 평가한다. 단, 학사일정 내에 연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수기관의 중간 평가서, 주간보고서, 순회지도평가, 출근부 등을 기준으로 중간 평가서(별표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④성적평가는 아래 항목으로 평가한 점수를 이수 교과목별로 일괄 적용한다.

항목	반영률(%)	구 분
연수기관 평가서	40	
순회지도평가	20	
중간평가	20	중간 평가할 때는 주간보고서만으로 평가가능 함
연수일지 평가	20	
계	100	

제5조(이수) ①현장연수는 해당 기간 내 교육과정을 완료함으로써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현장연수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

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
 2. 징병검사, 징병소집(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로 잔여기간의 실습이 어려울 때 또는 인턴십 종료 전 학점 인정평가가 필요할 때
- ③현장연수과정 이수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 필수과목과 현장실습은 현장연수과정 이수를 통해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절차) ①현장연수 프로그램 참여는 소속 학과 학년의 재학생 30% 범위 내에서 학과장 추천 하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학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2.27)

- ②현장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현장연수 당해 학기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 ③현장연수 이수 예정 학점을 포함한 이수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한 재학생에 한하며, 현장연수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은 해당 근로를 현장연수로 신청 할 수 없다.
- ④현장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학생은 직전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학과 학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7.2.27)
- ⑤현장연수 절차는 “현장연수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7조(현장연수 사전교육) 학과장은 현장연수 참가 학생에 대하여 현장연수 대상 업체의 현황, 실습예절 및 방법, 현장연수일지 작성 등 현장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지도) ①현장연수 교육의 실태를 파악 지도하고, 현장연수 교육의 개선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과 지도교수는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현장연수 순회지도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 교내 교직원여비규정을 근거하여 교통비 및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현장연수 순회지도 교수는 현장연수 순회지도 후 현장연수 순회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취업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7)

제9조(현장연수 일지의 작성) ①현장연수 교육에 참가한 학생은 현장연수 시 지참한 현장연수 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현장지도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제1항에 위배된 현장연수는 그 성적을 무효로 한다.
- ③현장연수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현장연수 종료 후에 연수일지(현장연수 결과보고서 포함)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연수기관변경 및 잔여기간대체) ①현장연수 중인 자가 현장연수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계속하여 현장연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현장연수기관 변경 신청서를 취업지원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현장연수기관에서 잔여기간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7.2.27)

- ②현장연수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 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현장연수 실시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연수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잔여기간을 정규 수

업 수강으로 대체하여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연수생의 의무) 현장연수생(인턴)은 인턴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 학칙, 실시기관의 제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현장연수를 통하여 알게 된 실시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현장연수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본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연수 의무위반자 조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연수 실시기관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연수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연수 실시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 직제개편에 관한 사항은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